

의안번호	2202806
의 퇴 인	이용우의원
회 답 일	2024. 11. 12
추 계 번호	24B28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14억 7,000만원, 2030년 30억 1,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17억 1,900만원(연평균 63억 4,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주차장 설비기준 등 (안 제6조제5항 신설)	21,470	2,145	2,402	2,689	3,013	31,719	6,344

주: 본 추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화 덮개'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지원대상 시설과 의무화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5항 신설 (주차장 설비기준 등)	제1항 ¹⁾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무규정

1)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5항 신설 (주차장 설비기준 등)	○	• (추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전기차 자동차 충전시설로 가정)에 질식소화 덮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산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주차장에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 및 동법 시행령³⁾

2)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공공건물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이며, 본 추계에서는 ‘질식소화 덮개’⁴⁾로 가정

- 질식소화 덮개는 주차장별로 1개씩 구비하는 것으로 가정
-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 수조의 경우 해당 주차장의 건물면적, 주차장 면적, 화재진압용 설비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가 확정될 사항으로, 본 추계에서는 설치가능한 주차장 현황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에서 제외함⁵⁾

수는 제외하며, 이하 "충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소방시설 설치 사례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 소화 덮개 구매 및 설치 사례가 존재하여 본 추계에서는 이를 활용하기로 함

5) 다만, 참고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검색한 결과, 전기차 화재진압용 냉각수조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공정한 입찰단가는 소화수조 30세트 2.03억원(대당 678만원)으로 나타남(2024)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⁶⁾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 다만, 적용례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화 덮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수에 소화 덮개 단가를 곱하여 산출
 - (주차장수)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4년 10월 현재 기준 5,647개 시설이며, 시설별 1개의 소화 덮개를 비치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운용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단위: 시설)

운영주체	2021	2022	2023	2024.10
국가(환경부)	3,882	4,201	4,647	5,030
지방자치단체	425	549	545	617
합 계	47,646	65,647	85,315	100,50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4,307	4,750	5,192	5,64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최근 3년간

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1)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2.0%

(2021~2023년) 연평균 증가율 9.8%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존 시설에 소화 덮개를 비치하여야 하므로 2026년 한 해 동안 해당연도까지 누적된 수량 만큼 소화 덮개가 필요하고 이후에는 신규 시설 수만큼 필요
- 2024년은 10월 기준 시설현황이므로, 2024년 12월 물량으로 추정(5,701개소)

[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개)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수(누적)	6,872	7,545	8,284	9,095	9,986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수(신규)	-	673	739	811	891	3,114
설치대상 시설 수(a)	6,872	673	739	811	891	9,9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소화 덮개 단가) 2026년 312만원, 2030년 338만원으로 추정

-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 2024년 기준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소화 덮개의 단가는 300만원⁷⁾으로 추정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에 따라 상승

[표 4] 소화 덮개 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소화 덮개 단가	312	319	325	332	3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7) 충청남도 당진시가 발주한 계약(‘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질식소화포 구입’)을 참고하면, 84개 구입에 2억 5,200만원으로 소화 덮개 단가는 300만원으로 추정

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14억 7,000만원, 2030년 30억 1,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17억 1,900만원(연평균 63억 4,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화설비가 필요한 주차장수(a, 국가/지자체)	6,872	673	739	811	891	9,986
소화 덮개 단가(b, 만원)	312	319	325	332	338	-
추가재정소요 (a×b, 백만원)	21,470	2,145	2,402	2,689	3,013	31,7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화 덮개’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지원대상 시설과 의무화되는 소방 시설의 종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nabo.go.kr